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33조(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)
- 나.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」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

2.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**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**을 안내드리오니,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
가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정의: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**다른 용도로 사용**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**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·사용**하는 행위

나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예시

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또는 사용

→ 재료비·장비비, 연구실 운영경비(Lab비 등), 워크숍 비용, 학회참가비 등의 공용비용으로 사용

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**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**할 경우 **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**받을 수 있으므로, 연구책임자 또는 동료 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일부를 위와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 시 **“거부”** 해야 함

■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없이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

→ 학생연구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학생인건비를 임의 감액 또는 회수

※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없이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정 불가

■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인건비 확약 월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

다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시 처벌사항: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. 끝.

산학협력단장

수신자 한경국립대학교 전체

협조자

시행 산학협력단-@N (2025.07) 접수

우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암로 327

전화번호 031-670-5613 팩스번호 031-670-5609 / jaesun26@hknu.ac.kr

()

/ <http://www.hknu.ac.kr>

/ 공개